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5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울산중갓집도서관 개관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“716명”에서 “719명”으로 3명 증원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692명”에서“695명”으로 3명 증원(안 제2조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별표 3)

1) 총 계: 716명 → 719명(증3)

2) 일반직: 713명 → 716명(증3)

나) 6급 이하: 660명 → 663명(증3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### 5. 참고사항

36 (제274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0705호, 2025. 5. 14.)

라. 입법예고: 2025. 5. 13. ~ 5. 19.(6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16명이며”를 “719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 1호 중 “692명”을 “69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
총계		719	-				
정무직	소계	1	-				
	구청장	1	1				
일반직	소계	716	-				
	3급	1	1				
	4급	7	5	1	1		
	5급	45	25	2	4	2	12
	6급 이하	663	-				
별정직	소계	2	-				
	5급 상당 이상	1	-				
	6급 상당 이하	1	-				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”정원“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716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692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rowspan="2">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직속기관</th> <th rowspan="2">사업소</th> <th col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71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무직</td> <td>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 <td>소계</td> <td>713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7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5</td> <td>25</td> <td>2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66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별정직</td> <td>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상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총계	716			-				정무직	소계	1		-				구청장	1	1					일반직	소계	713		-				3급	1	1					4급	7	5	1	1			5급	45	25	2	4	2	12	6급 이하	660			-			별정직	소계	2		-				5급 상당 이상	1		-				6급 상당 이하	1		-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719명</u>이며 -----.</p> <p>1. -----<u>695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rowspan="2">본청</th> <th rowspan="2">의회사무국</th> <th rowspan="2">직속기관</th> <th rowspan="2">사업소</th> <th colspan="2">동</th> </tr> <tr> <th>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계</td> <td>71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정무직</td> <td>소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구청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일반직</td> <td>소계</td> <td>716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7</td> <td>5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45</td> <td>25</td> <td>2</td> <td>4</td> <td>2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663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별정직</td> <td>소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 이상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총계	719			-				정무직	소계	1		-				구청장	1	1					일반직	소계	716		-				3급	1	1					4급	7	5	1	1			5급	45	25	2	4	2	12	6급 이하	663			-			별정직	소계	2		-				5급 상당 이상	1		-				6급 상당 이하	1		-			
기관별 직급별						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716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소계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소계	713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7	5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45	25	2	4	2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	660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	소계	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 상당 이상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상당 이하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계	719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소계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청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	소계	716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4급	7	5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	45	25	2	4	2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이하	663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	소계	2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급 상당 이상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급 상당 이하	1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근 거 법 규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 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총 정원은 3명 증원되나 정원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 감원되어,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손미영
- 연락처: (052)290-3062